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h·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포일	2021. 12. 15. / (총7매)			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(일반건강검진)	과 장	이 윤 신	전화	044-202-2820
	담당자	이 희 정		044-202-2828
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(암검진)	과 장	한 상 균		044-202-2510
	담당자	신 태 환		044-202-2515
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(근로자 일반건강진단)	과 장	김 정 연		044-202-8870
	담당자	김 원		044-202-8872
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(일반건강(암)검진)	부 장	홍 윤 희		033-736-3504
	담당자	곽 주 영		033-736-3550

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

□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, 국민의 건강 **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**하기 위해 2021년 국가**건강검진 기간**을 **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**한다고 밝혔다.

*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'3차 예방접종 간격 단축방안' 보고 ('21.12.10.)

○ 이번 **연장조치로,** 코로나19 **백신 접종**이 보다 **신속히 이루어지면서**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**원활한 검진이 진행**될 것으로 기대한다.

□ **연장 대상**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**일반건강검진** 및 **암검진**으로, **성별·연령별 검진**이 **포함**된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○ **사무직 근로자 등**(지역가입자, 직장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) **2년 주기 검진 대상자**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**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,**

- 이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**2021년 1월 3일 이후** 건강검진 대상자로 **추가등록 신청**하여야 하고,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.

* **(사무직)** 사업장 일괄 신청(EDI 또는 팩스), **(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)** '보이는 ARS' 및 공단 지사(유선 또는 방문)를 통한 신청

○ **비사무직 근로자**(1년 주기 검진 대상자)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**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**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 미수검분 검진을 **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.**

- 비사무직의 경우, **별도의 신청 없이**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, '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**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.**

□ 한편, **산업안전보건법**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**일반건강진단*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**한다.

* 산업안전보건법령(법 제129조 등)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(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, 산안법 제175조)

○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**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***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.

* 산업안전보건법령(법 제129조, 시행규칙 제196조)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○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**2021년 내에 실시**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**2022년 6월까지 실시**하면 **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**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.

○ 이번 조치로 **연장된 수검 기간(~2022.6월 內)에 검진을 실시**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**2023년에 실시**하면 된다.

- 다만,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**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**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**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**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,

-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**기저질환이 있는 경우,**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**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,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,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**은 **가급적 연도 내 검진**을 받으실 것을 **권고**할 방침이다.

□ **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,** 궁금한 사항은 **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**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.

- **(일반건강(암)검진 관련)** 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 ➢ 알림 ➢ 알림창
 ❖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www.nhis.or.kr) ➢ 국민과함께 ➢ 뉴스/소식 ➢ 공지사항
- **(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)**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➢ 뉴스·소식 ➢ 공지사항 ➢ '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'
- **(검진기관 문의)** 건강관리포털시스템(www.sis.nhis.or.kr) ➢ 이용안내 ➢ 공지사항
- **(기타문의)**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참고1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안내

□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

구분	일반건강검진		암검진
	사무직 등(2년 주기) 사무직 직장가입자, 피부양자, 지역가입자, 의료급여수급권자	비사무직(1년 주기) 비사무직 직장가입자	
적용대상	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		
연장기간	2022. 1. 1. ~ 6. 30. ※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.6.30.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. 다만,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.12.31까지 검진 가능		
연장내용	• 2021년 미수검한 일반건강검진 연장 (성·연령별 검진항목 포함)	• 2021년 미수검한 일반건강검진 연장 (성·연령별 검진항목 포함) * '22.7월 이후 검진 가능 • 단, 2022년 일반건강검진을 우선 검진 실시	• 2021년 미수검한 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 검진 연장 * 간암(6개월), 대장암(1년)은 별도 연장 없음 → 다만,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대상자 등록 가능
신청기간 및 방법	2022.1.3.부터 신청 가능		
	고객센터, 공단지사 ※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	신청 불필요	고객센터, 공단지사 ※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가능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참고2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

Q1	**-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누구인가요?**
A1	○ **2021년 건강검진** 대상자 중 **미수검자**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.
Q2	**- 일반(암)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**
A2	○ **비사무직(직장가입자, 1년 주기)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 가능하며, 추가검진('21년 미수검분)을 원할 경우 '22. 7월 1일부터 실시 가능합니다.** ○ **사무직(직장가입자, 2년 주기)은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**하면, 사업주가 '사업장 건강(암)검진 대상자 신청서'를 팩스, 우편, 방문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(**2022년 1월 3일 이후** 신청 가능) ○ **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**는 본인이 직접 **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·보이는ARS(1577-1000)·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** 가능합니다.(**2022년 1월 3일 이후** 신청가능) **※ 단, 보이는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만 신청이 가능**합니다.
Q3	**- 건강(암)검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**
A3	○ **2022년 12월말까지** 검진이 가능합니다. **다만,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, 2022년 6월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(☎ 1350)로 문의**하시기 바랍니다.
Q4	**- 2021년 대상자(홀수년도 출생자) 중 미수검자가 2022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, 2023년에는 검진을 못받나요?**
A4	○ 아닙니다. **2023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**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Q5	**-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?**
A5	❍ 2021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**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**입니다. - 다만, 검진주기가 짧은 **대장암(1년 주기)과 간암(6개월 주기)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**이므로,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. ※ 대장암·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'22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
Q6	**-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?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?**
A6	❍ **2022년 1월 3일 이후부터** 암검진 대상자 **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·보이는ARS(1577-1000) ·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**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직장가입자(사무직·비사무직)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'사업장 건강(암)검진 대상자 신청서'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참고3 「'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」 관련 Q&A

Q1	- **2021년 직장가입자(사무직) 미수검자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2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, 2021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?**
A1	○ 네, 인정됩니다. **'22.1.1. 이후 사업장에서 추가등록 신청**을 하여야 하고, **사업장은 EDI 또는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** 해주셔야 합니다.
Q2	- **2021년 직장가입자(비사무직) 미수검자가 2022년 6월 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, 2021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?**
A2	○ 네, 인정됩니다. **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** 2022년 6월까지 검진**받을 경우, '21년과 '22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 한 것으로 간주**합니다. - 단, **'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진단('21년 미수검분)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**해야 합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